

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 의 자	김영길 의원

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5. . .

발 의 자: 김영길 의원(1인)

찬 성 자: 김영태·김재우·김정도·박세채
이명희·이상호·이정희·추은희
의원(8인)

1. 제안이유

구미시민의 비만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: 구미시민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 근거 마련(안 제6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6조, 제12조, 제19조

나. 부서검토: 건강증진과 의견제출(붙임)

디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조례 제 호

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비만”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비만친화식품””을 ““비만유발식품”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
2. 연령·집단별 맞춤형 지원 방안
3. 홍보·교육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비만예방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비만”이란 지방조직에 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정상적이며 과도하게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.</p> <p>2. “비만친화식품”이란 비만예 직·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,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.</p> <p>제6조(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)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와 시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 고 비친화식품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비만”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.</p> <p>2. “비만유발식품”이란 ----- ----- ----- -.</p> <p>제6조(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</p> <p>2. 연령·집단별 맞춤형 지원 방안</p> <p>3. 홍보·교육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비만예방에 필요한 사항</p>

관계법령

□ 「건강증진법」

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보건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·건강상태·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

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건강증진사업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
2. 영양관리
3. 신체활동장려
4. 구강건강의 관리
5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
6.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
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·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건강증진과

조 례 명	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거 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「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6조, 제12조, 제19조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구미시민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 근거 개정(안 제6조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최근 국내 성인 5명 중 2명은 비만에 해당되고, 이 중 초고도 비만 유병률은 최근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○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비만예방 실천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대효과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맞춤형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대상자별 건강 형평성 제고▪ 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음○ 소요예산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○ 문 제 점 : 해당사항 없음	

[별지 제2호서식]

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5조(강사), 안 제8조(예산지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안 제5조(강사), 안 제8조(예산지원)에 비용이 수반되나 예상되는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

4. 작성자

-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이현숙(☎480-4052)